

2022 Retirement Pension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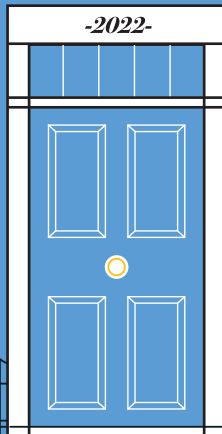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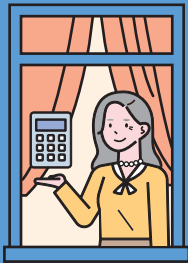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2022 유안타증권



■ 2022년 변경되는 연금 제도

■ 우리가 궁금해 하는 퇴직연금Q&A



2022 유안타증권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행복한 생각 유안타증권이 함께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연금저축과 함께 3층 사회보장체계의 하나로서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유안타증권의 퇴직연금은 한사람 한사람 모두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목표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우편물을 E-mail로 받아보세요

우편통보지를 E-mail로 변경하는 방법

1. 온라인에서 변경

- 개인형IRP

홈페이지(www.myasset.com) (뱅킹/계좌/대출)개인정보조회/변경 및 통보지관리)에서 E-mail로 변경

- DC플랜 가입자

홈페이지(www.myasset.com) 에서 E-mail 주소 등록 후 퇴직연금 홈페이지(My퇴직연금)기본정보> 가입자정보조회/변경)에서 우편통보지 E-mail로 변경

2. 유선변경 [고객센터(☎1588-2600) 및 영업점]

가입자 본인 요청에 의하여 E-mail주소 등록 및 우편통보지 E-mail로 변경 가능

Contents

| | |
|--------------------------------------|----|
| 2022 변경되는 퇴직연금 제도 | 4 |
| 1. 퇴직연금제도 일반 사항 | |
| 01. 퇴직연금제도 개요 | 6 |
| 02.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 9 |
| 03. 지연이자 | 10 |
| 04.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 11 |
| 05.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 | 12 |
| 06. 퇴직연금제도를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처리방법 | 14 |
| 07. 수급권의 보호 | 14 |
| 08. 계약이전 절차 | 15 |
| 09. 과세체계 | 16 |
| 10. 확정급여형(DB)제도의 적립금 비율 | 20 |
| 2. 노후설계 및 투자관련 사항 | |
| 01.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 | 24 |
| 02. 노후설계의 중요성 | 24 |
| 03. 노후보장 체계 | 25 |
| 04. 노후자금 상세설계 | 25 |
| 05. 투자의 기본원칙 | 26 |
| 06.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 28 |
| 3. 우리가 궁금해 하는 퇴직연금에 관한 Q&A | 31 |

2022년 퇴직연금 이렇게 변경되었어요

* 유안타증권 개인형IRP 수수료 조건없이 면제 ('0원')

퇴직연금 계좌는 운용관리계약서, 자산관리계약서에 의하여 매년 관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저금리시대! 수수료 차이가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각각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수료를 비교하신 후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유안타증권 IRP 수수료는 2021.05.17일부터 아래와 같이 인하 적용되며, 이전 기간에는 기존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 개인부담금(세액공제용)납입금액 | 퇴직(연금) 납입금액 |
|---------|------------------|-------------|
| 운용관리수수료 | 무료 | 무료 |
| 자산관리수수료 | 무료 | 무료 |

IRP 수수료 (예시: 퇴직급여 1억원 20년간 가입시)

| 구분 (수수료를 예시) | A 은행 (0.40%) | B보험 (0.50%) | C증권 (0.25%) | 유안타증권 (무료) |
|-----------------|--------------|-------------|-------------|------------|
| 연간 | 400,000 | 500,000 | 250,000 | 0 |
| 총합계(20년) | 8,000,000 | 10,000,000 | 5,000,000 | 0 |

[알아두세요!] 재직중인 회사가 폐업하여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퇴직연금 청구절차입니다. 퇴직연금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폐업·파산한 기업의 근로자는 퇴직연금 가입 금융회사를 상대로 직접 퇴직연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폐업사실 확인서 등 근로 기업의 폐업여부 및 폐업기업에서의 과거 근로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등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자격상실 확인서류 중 하나

2.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DC는 당해 근로자의 적립금을 지급하고, DB는 퇴직급여법에 따라 적립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16①(2) 및 §17②(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등)

**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의미

3. 퇴직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 개설이 필요하나,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거나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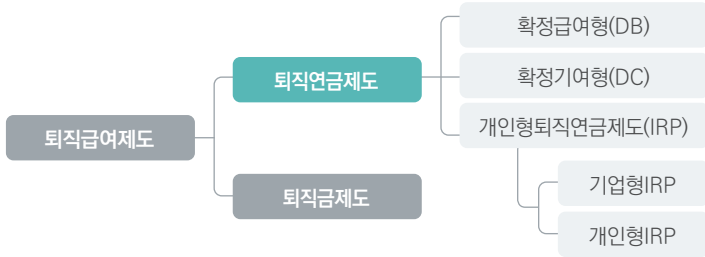
1. 퇴직연금 제도 일반사항



I01 퇴직연금제도 개요

퇴직급여 제도의 구성

2005년 12월 1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에 퇴직연금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 제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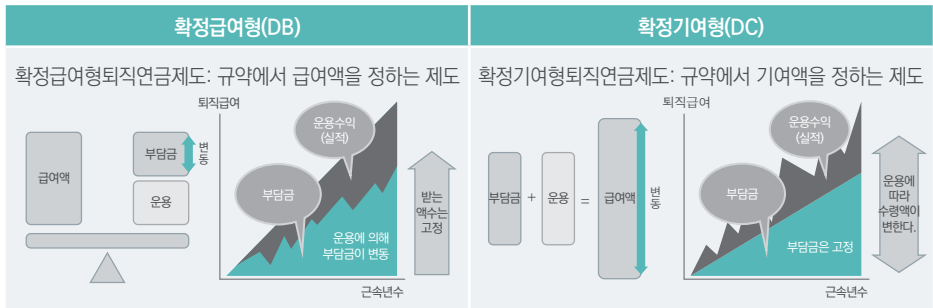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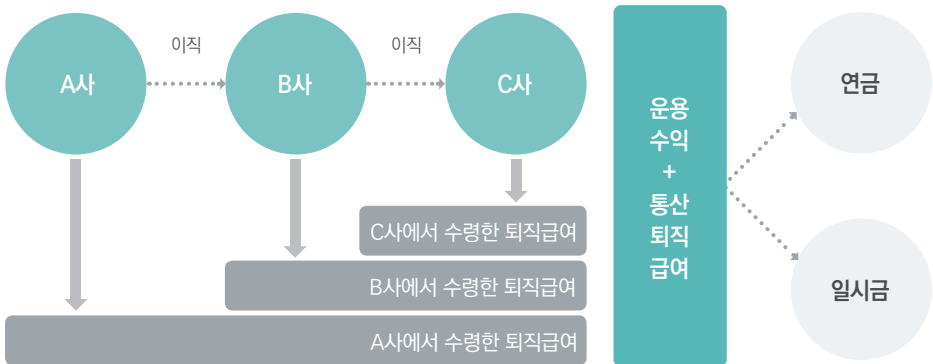
I01 퇴직연금제도 개요

제도별 특징

| | |
|--------------------------|---|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으로 확정된 제도 사용자는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며, 퇴직 시 가입자는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만큼의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 사용자는 금융기관에 근로자 개별 부담금을 납입하고, 퇴직 시 가입자는 부담금 및 자기 책임하에 운용한 손익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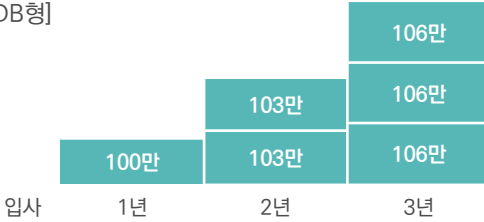
| | |
|-------------------------|---|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형: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 또는 요구에 따라 규약신고 없이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특례제도 개인형: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입금하거나, 개인부담금을 적립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은퇴시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는 제도 |
|-------------------------|---|



I01 퇴직연금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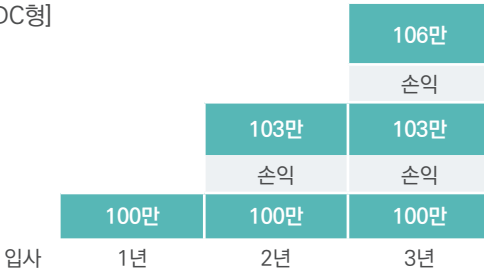
연봉 1,200만원(월100만원)에 입사 후 3년간 근무 후 퇴직 시
(매년 임금상승률 3%, 수익률 3% 가정)

[DB형]



퇴직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
= 106만(임금상승분 포함) × 3 = 318만원
임금상승률에 따라 퇴직급여 달라짐

[DC형]



(100만 + 3만) + (103만 + 6만) + 106만
= 309만원 + 9만원(투자수익금) = 318만원
운용성가에 따라 퇴직급여 달라짐

제도별 비교

| 구분 | DB | DC | IRP | |
|--------------------|--------------------------------|----------------------------------|-----|-----|
| | | | 기업형 | 개인형 |
| 사용자부담금 | 퇴직금추계액 이상 (계리자산출 안내)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 | - |
| 퇴직급여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 이상 | 사용자부담금 ± 운용손익 | - | - |
| 적립금 운용주체 및 수익귀속 | 사용자(기업) | 가입자(근로자) | | |
| 중도인출 | 불가 | 가능(법정 사유 限) | | |
| 가입자부담금 | 불가 | 가능(연금계좌 합산하여 연1800만원限) | | |
| 급여종류 및 수급요건 | 연금 | 55세 이상 & 연금지급기간 5년 이상 | | |
| | 일시금 |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 | |

102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급여를 노후의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중도인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 사유에 한하여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기업형IRP |
|------|-----------|--------------------|
| 중도인출 | 불가능 | 적립금의 100% |
| 담보제공 | 적립금의 50% | 적립금의 50% |

※ 당사: 현재 담보제공 가능 상품 없음

중도인출·담보대출의 법정 사유

| 법정사유 |
|---|
|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한 사업장 근로 동안 1회 限) |
|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 ④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받은 경우 |
| ⑤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사유는 중도인출 불가, 담보대출만 가능한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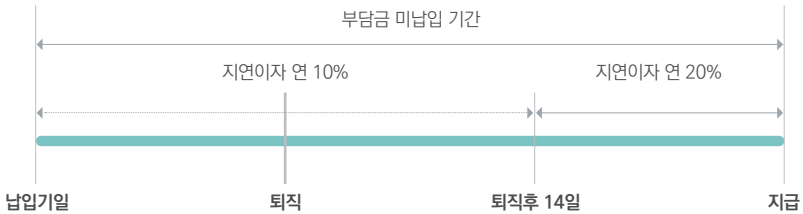
※ 본인 및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으로 중도인출 신청 시 부담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가능

103 지연이자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가입자의 운용수익 손실을 보전하고 적기 납입을 유도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이 강화되었습니다. (확정급여형(DB) 제외)

지연이자율

- 부담금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가입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 → 연 10%
- 상기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 납입일까지 → 연 20%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일 경우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밖에 상기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4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임금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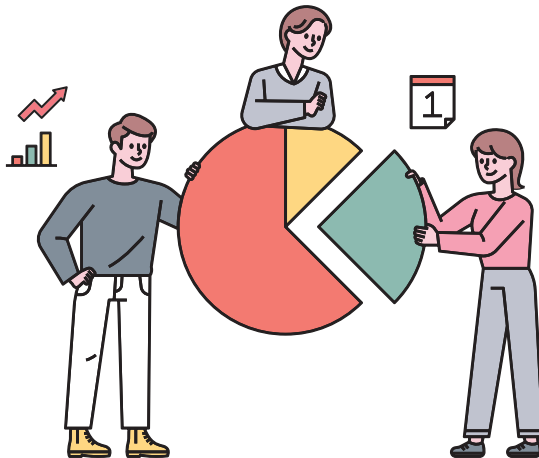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어떠한 급여금산출에 기초가 되는 단위 개념입니다.

[평균임금 계산식]

$$\text{평균임금} = \frac{\text{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주1)}}{\text{3개월 동안의 총 일수* 주2)}}$$

- * 주1) 임금총액: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거나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지급받아야 될 금액으로 세액 공제전의 임금
- * 주2) 총 일수: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을 역으로 소급하여 계산한 기간의 일수

※ 참고: 일정기준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12개월로 계산하여 임금총액에 가산합니다.



1. 퇴직연금제도 일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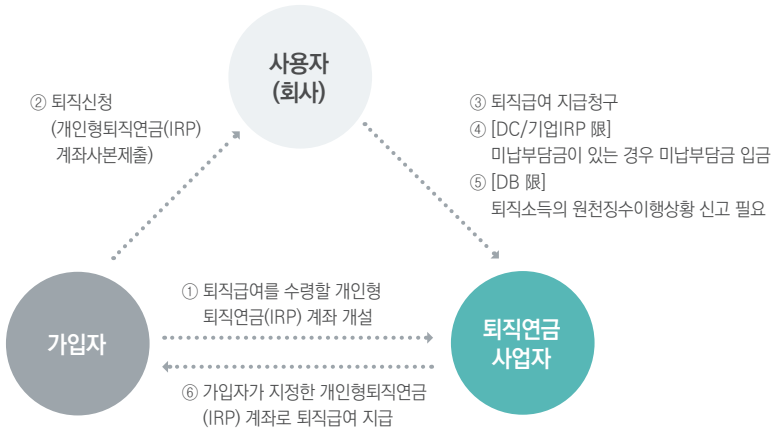
I05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 IRP 의무이전 예외사유: ① 만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 수령 시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퇴직금도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의무 이전(2022.4.14 시행)

퇴직급여 지급절차



1.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개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의무이전되어야 하므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를 개설합니다.

2. [퇴직의사 전달]

가입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사본과 함께 퇴직의사를 회사에 전달합니다.

3. [퇴직급여 지급청구]

사용자(회사)는 퇴직연금을 가입 금융기관에 가입자의 퇴직사실을 알리고, 퇴직급여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퇴직급여지급청구서(당사양식),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계좌사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DB 限), 임원퇴직급여한도금액확인서(DC/기업형IRP, 임원 퇴직의 경우 限)

105 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

4. [(DC/기업IRP 限) 미납부담금 납입]

가입자(퇴직예정자)의 퇴직연금에 불입하지 못한 미납부담금이 있는 경우 납입이 필요합니다. 가입자의 퇴직연금에 불입된 사업주부담금+운용손익이 퇴직급여가 되며, 퇴직연금사업자가 과세이연 신고 및 원천징수 된 세금을 납부합니다.

5. [(DB 限) 퇴직소득세신고]

퇴직급여의 지급일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 퇴직소득금액과 퇴직소득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퇴직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되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인출이 발생할 때 퇴직연금사업자가 납부하므로, 사용자(회사)는 별도의 납부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 퇴직연금제도별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시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의 지급시 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소득자 별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연금제도 |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
| 확정급여형(DB) | 사용자(회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금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과세이연(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이연신고) 연금계좌가 아닌 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 |
|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 |

6. 퇴직급여 지급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시 관련 세금을 차감 후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당사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가입자가 당사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퇴직급여 이전시 가입자가** 원할 경우 현재 운용중인 자산의 매각 없이 그대로 현물이전이 가능합니다.

I06 퇴직연금제도를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처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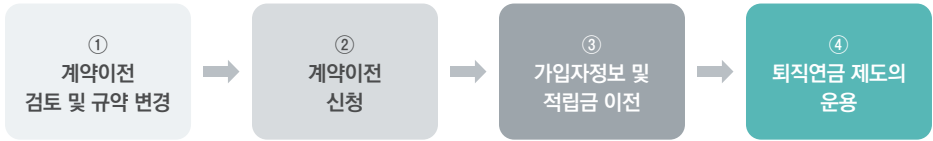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합니다.

| | |
|--------|--|
| 제도의 중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가 일시적 재정 압박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기존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취소 이후 타 사업자에게 이전되기까지 근로자의 부담금 납부, 급여지급, 적립금 운용, 운용현황 통지, 가입자 교육 등은 계속 수행해야 함 |
| 제도의 폐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사 합의로 폐지/제도변경에 따라 기존제도 폐지• 노동부에 퇴직연금규약(DB/DC) 폐지신고• 적립금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봄 |

I07 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담보대출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적립금의 50% 한도 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108 계약이전절차



① 계약이전 검토 및 규약변경

규약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계약이전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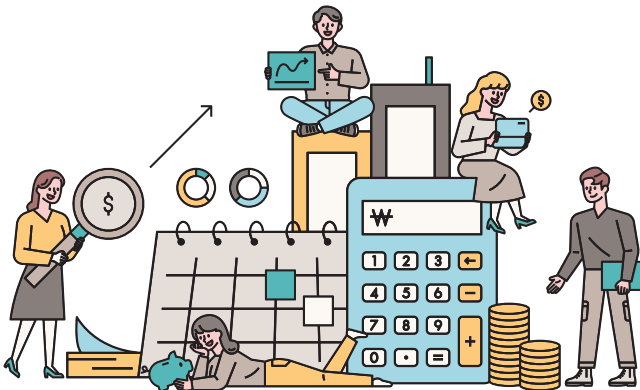
새로운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과 각각 계약을 체결 후 이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계약이전을 요청합니다.

③ 가입자 정보 및 적립금 이전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에는 가입자 정보가,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에는 적립금이 이전되도록 해야 합니다.

④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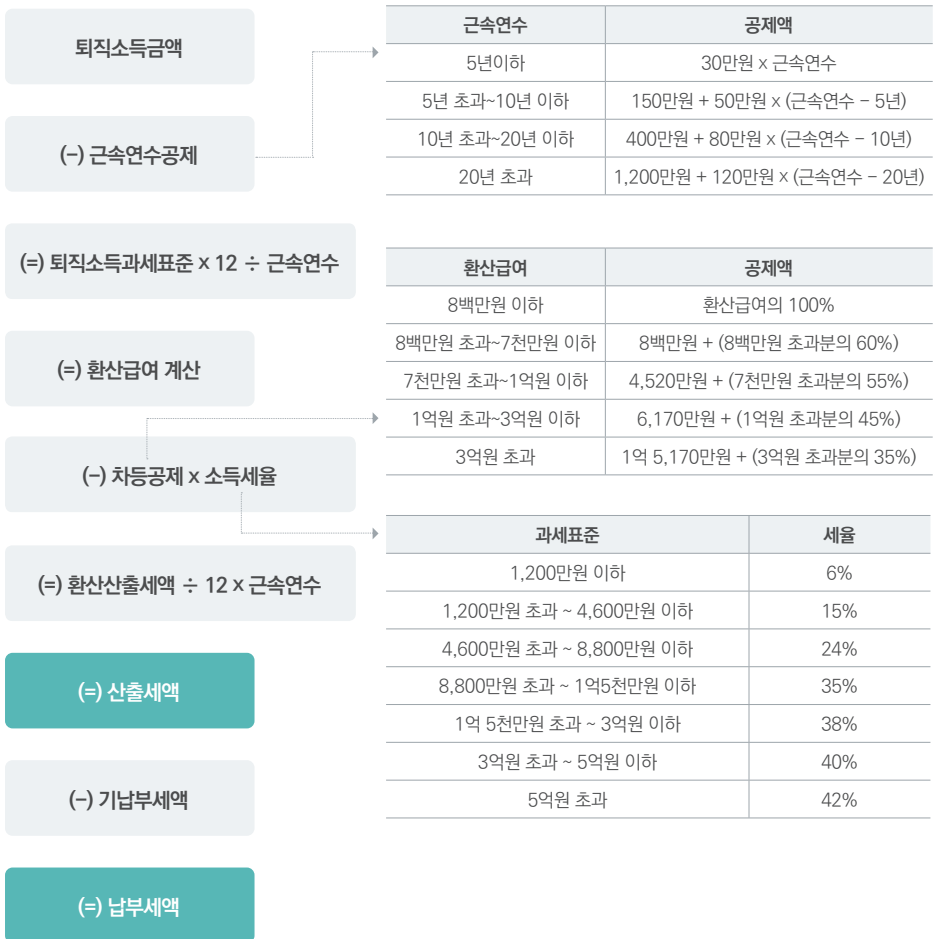
새로운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109 과세체계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적용되던 정률공제(40%)가 퇴직소득 수준별 차등공제(100%~35%)로 전환되어, 고액 퇴직자에게 유리했던 퇴직소득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2016년~2019년까지 4년간 점진적으로 적용하다가 2020년부터는 100% 개정방식으로 적용합니다.



109 과세체계

[퇴직소득세 예시]

입사일 2003.11.01~퇴사일 2020.10.30(17년 근무) / 퇴직급여 200,000,000원

| 계산순서 | 해당금액 | 계산식 |
|--------------------------|---|---|
| ① 근속연수공제 | ① 960만원 | ① 400만원 + 80만원 × 7년 |
| ② 환산급여 - ③ 차등공제환산과세표준 | ② 134,400,000 - ③ 77,180,000 = ④ 57,220,000원 | {(퇴직금 - ①) × 12/17년} - (6,170만원 + 1,548만원) |
| ⑤ 환산산출세액 | 8,512,800 | ④ × 과세표준별 세율 |
| 산출세액 | 12,059,800원 | ⑤ / 12 × 17년 |

연금/일시금 수령시 과세체계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연금수령조건의 미충족 또는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이연퇴직소득이 포함된 퇴직연금에서 연금수령시 가입기간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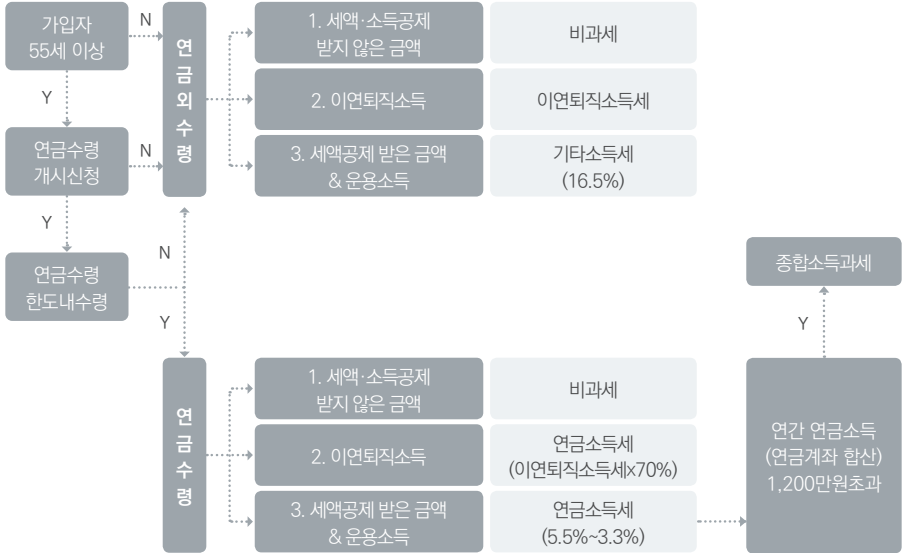
연금/일시금 수령시 소득의 원천과 수령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됩니다.

| 소득의 원천 \ 수령형태 | 연금 수령 (연금수령한도 ^{주1)} 이내) | 일시금 수령 (연금수령한도 ^{주1)} 초과) |
|---------------------|--|--------------------------------------|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 | 과세제외 | 과세제외 |
| 이연퇴직소득 | 연금소득세(분리과세) ^{주2)} • 이연퇴직소득세의 70% 수준 (단, 연금수령기간 10년 초과분부터 60% 적용) | 이연퇴직소득세 |
|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 연금소득세(종합과세) ^{주3)} • 70세 미만: 5.5% • 70세~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 기타소득세 16.5% |
| 운용손익 | | |

※ 상기 세율은 지방세 포함 세율입니다.

109 과세체계

[연금/일시금 수령시 과세체계 흐름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인출은 연금소득세 적용

주1) 연금수령한도란 한 과세기간에 연금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하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text{연금 수령 한도} = \frac{\text{과세기간개시일(연금개시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개시신청일)의 계좌평가액}}{\text{(11- 연금수령연차)}} \times 1.2$$

*연금수령연차: 최초로 연금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차년도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10년차 까지 적용 (단,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한 연금계좌의 경우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6차년도로 하여 연금수령연차를 계산)

주2) 이연퇴직소득을 원천으로 연금 수령시 연금 지급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과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주3) 소득·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및 운용손익을 연금 수령시 연간연금소득(공적연금 제외)이 1,200만원 초과할 경우 소득이 발생한 익년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신고가 필요합니다.

109 과세체계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납입 · 운용시 세제혜택 >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퇴직급여를 이전할 경우 세전 퇴직급여가 이전되어, 퇴직소득과 운용 손익에 대한 과세가 인출이 발생할 때까지 이연 됩니다.



가입자부담금 납입 시 관련 세제

확정급여형(DB)을 제외한 퇴직연금제도에는 사용자부담금 외에 가입자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하여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간납입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C/기업형IRP/개인형IRP: 연 1,800만원(연금저축계좌와 합산) • 전금융권 합산 납입한도이며, 한도 설정 후 가입자 부담금 납입 | | | |
|--|---|---------|--------|------------------|
| | | | | |
|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 세액공제 한도 | | 공제율 (지방소득세포함) |
|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 ~4천만원(~5.5천만원) | 700만원 | 900만원 | 16.5% |
| | ~1억원(~1.2억원) | | 700만원 | 13.2% |
| 1억원초과(1.2억원초과) | | | | |
| * 50세 이상 세액공제한도(900만원)는 2020년 납입분부터 2022.12.31까지 한시 적용 | | | | |

110 확정급여형(DB)제도의 적립금 비율

재정검증

사용자(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최소적립금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금^{주1)}은 기준책임준비금에 법정 최소적립비율(2019~2021년: 90%, 2022년 이후: 100%)을 곱하여 계산하며, 최소적립금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를 “**재정검증**” 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재정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6개월 이내에 사용자(회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재정검증 결과가 적립부족일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근로자에게 서면 등에 의한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주1) • 최소적립금 = Max(계속기준 책임준비금, 비계속기준 책임준비금) x 법정 최소적립비율

- 계속기준 책임준비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급여지급을 위하여 수리적으로 계산한 금액(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방식인 예측단위 적립방식으로 산정)
- 비계속기준 책임준비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급여지급을 위하여 계산한 퇴직급여추계액(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산정, 가입 기간에 급여수준을 곱하여 산출한 가입자별 예상급여를 합하는 방식으로 산정)

• 법정 최소적립비율

| 사업연도 | 2012.7.26~2013 | 2014~2015 | 2016~2018 | 2019~2021 | 2022~ |
|-----------|----------------|-----------|-----------|-----------|-------|
| 법정 최소적립비율 | 60% | 70% | 80% | 90% | 100% |

※ 과거근무기간을 소급하여 도입한 경우 퇴직연금 가입연차에 따라 위의 법정최소적립비율보다 작은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10 확정급여형(DB)제도의 적립금 비율

적립부족

재정검증결과 사용자(회사)의 보유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할 경우 적립금 부족을 3년 이내에 균등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부족금액에 대한 자금조달방안, 납입계획 등을 포함하는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작성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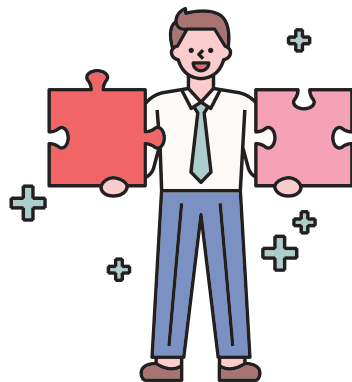
최소적립금대비 부족한 금액의 1/3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하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2호의 1 (2022.4.14시행)]

재정안정화계획서의 작성대상이나, 작성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을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5호]

적립초과

재정검증결과 사용자(회사)의 보유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50%를 초과하고 초과분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적립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정검증결과 | 조치사항 |
|---|------------------------|
| $\text{기준책임준비금} \times 150\% < \text{보유적립금}$ | 사용자의 적립금 반환 요구시 반환가능 |
| $\text{기준책임준비금} \times 100\% < \text{보유적립금} \leq \text{기준책임준비금} \times 150\%$ | 초과분은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가능 |



**2022
RETIREMENT
PENSION PLAN**

2.

노후설계 및 투자관련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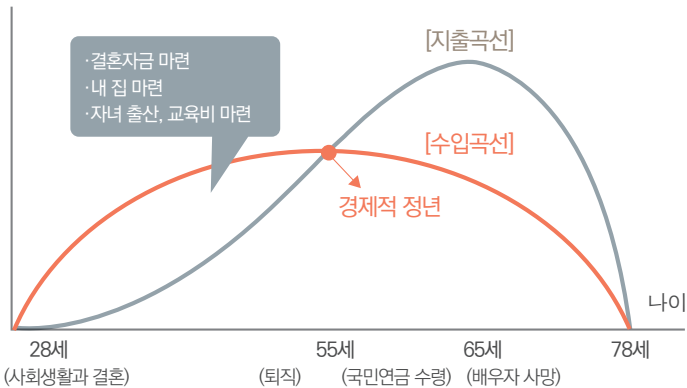


I01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

일생 동안의 수입과 지출은 생애 주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그에 맞춘 재무설계가 필요합니다.

[예시]

| 구분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
| 생애주기 | 결혼기 | 자녀교육기 | 가족성숙기 | 노후생활기 |
| 자산관리 이슈 | 결혼/주택마련 자금 | 교육투자 자금 | 자녀결혼 및 은퇴자금 | 상속 및 의료자금 |
| 자산관리 계획 | 대출설계 | 보험설계 | 은퇴설계 | 상속설계 |
| 투자목적 | 자산축적 | 자산축적 | 자산관리 | 자산관리 및 소비 |
| 안전자산 : 위험자산 | 30 : 70 | 30 : 70 | 50 : 50 | 65 : 35 |
| 대표적 투자성향 | 적극투자형 | 위험중립형 | 위험중립형 | 안정추구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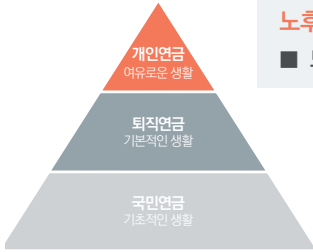


I02 노후설계의 중요성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기대수명이 2010년 81세에서 2023년 91세로 이미 100세 시대에 도래하였고 이에 따라 은퇴기간 역시 20년에서 40년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은퇴 준비를 위한 노후 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103 노후보장 체계

경제적 정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는 노후생활비는 국민연금은 물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과 개인의 저축, 보험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노후자금 산출방법

■ 노후자금 = 은퇴 직전 소득 X 소득대체율(60~80%) X 노후기간(20~30년)

[선진국형의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추진]

104 노후보장 상세설계

[STEP 1] 퇴직 후 필요한 자금과 수입원 확인하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득대체율 설정 및 국민연금, 개인연금 수령 예상금액을 함께 고려하여 퇴직 후 필요자금을 계산합니다.

[STEP 2] 물가상승을 고려한 미래가치 계산하기

지금까지 계산한 퇴직 후 필요자금은 현재가치입니다. 돈의 가치는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퇴직시점에 필요한 돈은 물가상승분 만큼의 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STEP 3] 노후기간 동안 필요한 자금규모 구하기

지금까지 퇴직 첫 해에 필요한 생활비가 구해졌다면, 이제는 노후 전 기간 동안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노후 기간 동안 필요한 금액은 퇴직 후 사망까지 노후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퇴직 후 노후자금을 얼마의 수익률로 운용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STEP 4] 가지고 있는 자금 확인, 추가로 필요한 돈 계산하기

3단계까지의 과정을 거쳐 필요한 총 노후자금이 계산되었습니다. 이제는 본인이 얼마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와 수익금이 지나면서 불어날 것이고, 은퇴시점 받게 되는 퇴직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05 투자의 기본원칙

■ 분산투자

주식, 채권, 펀드 등 투자의 수단은 상당히 다양할 뿐만 아니라 투자 수단별로 각각의 특징이 다르고, 장단점이 다르며, 고유의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연관성이 적은 투자수단을 적절히 혼합하여 그 매입 시기를 달리하는 분산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산의 분산

하나의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가격변동이 다른 여러 개의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한 자산인 예금이나 채권에만 투자하는 것이 주식 투자를 포함하는 것보다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은 서로 수익률이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 채권시장이 안 좋을 경우 주식시장이 이를 보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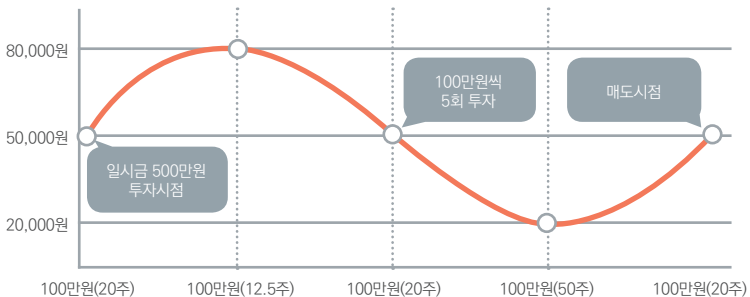
시기의 분산

퇴직연금제도는 부담금이 정기적으로 납입되는 적립식 투자입니다. 적립식 투자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일정금액을 투자하는 형태로 “Cost Average Effect(평균매입단가 하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Cost Average Effect(평균매입단가 하락 효과)란?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매입하여 투자 타이밍을 분산시킴으로써 낮은 가격에서 많이, 높은 가격에서 적게 매입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거치식으로 매입한 경우에 비해 적립식 매입방법의 평균매입단가가 더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시] 500만원 일시금 VS 정액분할 투자 비교



| 구분 | 투입금액 | 매입주수 | 환급금 | 수익률 |
|-----------|----------|--------|-------|-------|
| 일시금 | 500만원 | 100주 | 500만원 | 0.0% |
| 적립식(정액분할) | 100만원X5회 | 122.5주 | 613만원 | 22.6% |

105 투자의 기본원칙

■ 원칙과 목적을 갖춘 투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와 원칙이 중요한 것처럼 투자에 있어서도 목표와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도한 욕심이나 보상심리로 인하여 투자에 실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투자목적은 분명히 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원칙을 정하여 투자를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 타이밍보다 준비가 먼저

주변에서 소위 대박이라고 불리는 투자기회가 생긴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여 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의 경제 흐름과 투자흐름을 종합하여 봤을 때 그 후에도 좋은 기회들이 계속해서 생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차를 타 투자에 실패하기보다는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3가지 투자원칙을 알아보았습니다. 투자에 있어 원칙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과 투자위험을 대하는 성향에 맞게 투자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지 않는 투자는 실패의 지름길이며 투자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 역시 성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투자수단이 있는 만큼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의 상황과 성향에 맞게 투자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투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106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운용방법

퇴직연금 가입시 매달(또는 매년) 적립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운용하여 수익을 늘릴 수가 있을까요?
먼저 그 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약정기간 동안 투자하면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받는 원리금보장운용방법

둘째,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실적배당형 운용방법

셋째, 첫째와 둘째 운용방법을 제외한 실적배당형 운용방법

|  저위험 저수익 | 운용방법 | 상품종류 | 비고 |
|---|--|--|--|
| |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 적금 • 최저이자율을 보증하는 보험계약(GIC) • 환매조건부매수계약(RP)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채증권 등 | 자산관리계약을 특정금전신탁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동 자산 관리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 장하는 운용방법(분산요건을 갖춘 RP제외)에는 투자불가 |
| |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형 펀드, 채권혼합형 펀드 • 환위험 헤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외국의 국채 • 투자적격 주택저당증권, 학자금대출증권 등 | |
|  그 외 (위험자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혼합형, 주식형 펀드 • 상장주식(DC/개인형IRP 불가) • 투자적격등급의 회사채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 정하는 투자금지증권은 운용불가 • 적립금의 70% 한도 내에서 운용 | |

106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운용방법 변경

만기도래, 투자성향 변경,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상품운용방법을 변경하실 수 있으며, 운용 방법 변경에는 아래의 두 가지가 있으므로 구분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운용상품 변경: 기존 보유상품을 매도하여 그 매도자금으로 새로운 상품을 매수하는 방법
- 투자비율 변경: 기존 보유상품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향후 납입할 금액(부담금)에 대한 투자 비율을 변경하는 방법

위험자산 총 투자한도

퇴직연금 적립금은 노후 생활을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자산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 및 퇴직연금 감독규정에서는 위험자산에 대하여 투자가능한도를 부여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70%
-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



**2022
RETIREMENT
PENSION PLAN**

3.

우리가 궁금해하는 퇴직연금 Q&A

- Q1. 퇴직연금 ETF 매매에 대해 알려주세요.
- Q2. 퇴직연금 수익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Q3. 다른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옮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Q4.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초과 내역 통지를 받았습니디. 어떤 내용인가요?
- Q5. 내 연금정보는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Q1. 퇴직연금 ETF 매매에 대해 알려주세요.

1 모든 ETF를 매매할수 있나요?

아닙니다.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따라 아래의 ETF는 퇴직연금내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매매불가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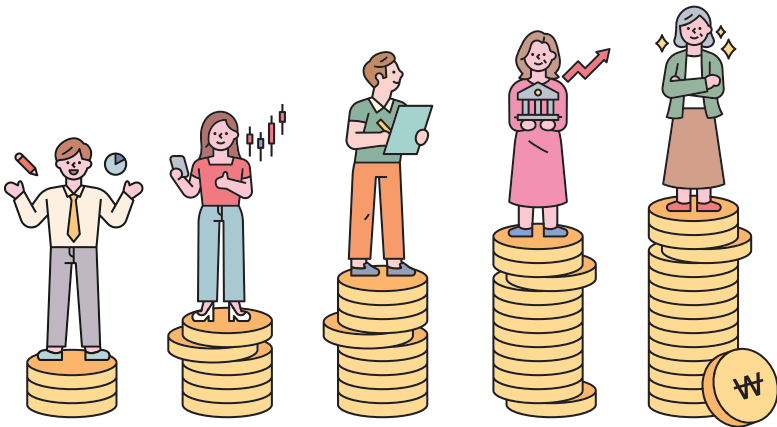
- 레버리지/ 인버스 ETF
- 파생상품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의 40%를 초과하는 ETF 및 투자비적격 등급 ETF
- ETF 종목(주식형)은 대부분 위험자산으로 최대 투자한도 70% 적용됩니다.

2 ETF/리츠 매매시 수수료와 세금은?

- 수수료: 매매수수료 없음
- 과세: ETF - 매매차익, 분배금 발생시 부과되는 배당소득세 면제
리츠 - 매도시 거래세 징수 ※거래세(0.23%) = 증권거래세(0.08%) + 농어촌특별세(0.15%)

3 ETF/리츠 매매 방법은?

- 주문가능시간: 08:30~16:00(시간외 단일가 불가)
- ETF/리츠 매매 약정은 최초1회 설정하며, 사용가능한 현금성자산으로 약정금액을 설정합니다.
약정금액은 적립금을 구분(개인납입액/회사납입액)하여 증액/감액이 가능합니다.



3. 우리가 궁금해하는 퇴직연금 Q&A

Q2. 퇴직연금 수익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연간 운용현황보고서를 통해 가입자가 자신의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예상 연금수령액을 확인하고, 사전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납입하여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에는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누적·연평균), 펀드로 운용할 때 부과되는 총보수율과 100만 원당 총 보수액 안내, 55세 이후 연금 수령액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연간 운용현황보고서 예시]

■ 정보고지 시점() 기준으로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납입원금 합계액은 (① 80,684,463 원)이며, 적립금(평가금액)은 (⑤ 101,503,664 원), 누적수익률은 (⑥ 25.80 %)입니다.

| | |
|--|------------|
| ① 납입원금 | 80,684,463 |
| ② 운용손익 | 20,819,201 |
| ③ 중도인출금 등* | 0 |
| * 중도인출, 연금지급, 퇴직급여 지급, 제도전환 등 | |
| ④ 수수료 금액* | 0 |
| * DC 및 기일형IRP의 경우, 가입(사용자)이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하, 수익률 계산시 동일) | |

■ 납입원금[①]과 운용손익[②]의 합계에서 중도인출금 등[③] 및 수수료 금액[④]을 차감한 결과와 적립금(평가금액)[⑤]입니다.

| | |
|--|-------------|
| ⑤ 적립금(평가금액) | 101,503,664 |
| ⑥ 누적수익률(수수료 차감 후) | 25.80 |
| ⑦ 연평균수익률* | 2.20 |
| * 상기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안타증권 고객센터☎ 1588-2600) | |

1. 예상 연금수령액

※ 예상연금수령액은 향후 세금, 납입내역, 수익률, 연금수령방법 등에 따라 실제 연금수령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연금수령 개시신청 가능일 이후에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연금수령개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 방문시 국민연금, 연금지출 등 개인별 연금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정)예상 납입액 | 624 | | | | | 2.5 | | | | |
|------------|--------|--------|--------|--------|--------|--------|--------|--------|--------|-------|
| | 연령(만)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 연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2032년 | 2033년 | 2034년 | 2035년 | 2036년 | 2037년 | 2037년 |
| 금액 | 10,069 | 10,321 | 10,579 | 10,843 | 11,114 | 11,392 | 11,677 | 11,969 | 12,268 | |
| 연령(만) | 64세 | 65세 | 66세 | 67세 | 68세 | 69세 | 70세 | 71세 | 72세 | |
| 연도 | 2038년 | 2039년 | 2040년 | 2041년 | 2042년 | 2043년 | 2044년 | 2045년 | 2046년 | |
| 금액 | 12,575 | 12,889 | 13,211 | 13,542 | 13,880 | 14,227 | 14,583 | 14,947 | 15,321 | |
| 연령(만) | 73세 | 74세 | 75세 | 76세 | 77세 | 78세 | 79세 | 80세 | 81세 | |
| 연도 | 2047년 | 2048년 | 2049년 | 2050년 | 2051년 | 2052년 | 2053년 | 2054년 | 2055년 | |
| 금액 | 15,704 | 16,097 | 0 | 0 | 0 | 0 | 0 | 0 | 0 | |
| 연령(만) | 82세 | 83세 | 84세 | 85세 | 86세 | 87세 | 88세 | 89세 | 90세 | |
| 연도 | 2056년 | 2057년 | 2058년 | 2059년 | 2060년 | 2061년 | 2062년 | 2063년 | 2064년 | |
| 금액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3. 우리가 궁금해하는 퇴직연금 Q&A

Q3. 다른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옮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 이전 간소화 절차에 따라, 사용자(기업)는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를 통해 한번만 신청하면 모든 퇴직연금 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회사별로 상이하던 '이전신청서' 서식도 표준화되어,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최대 7개에서 1-2개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Q4.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초과 내역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위험자산별 투자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상품은 주식형 또는 주식혼합형 펀드(주식편입비중 40% 초과), 비위험자산 상품은 채권혼합형펀드(주식편입비중 40% 이하), 원리금보장상품(정기예금 등)이 있습니다.

퇴직연금감독규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고객님의 적립금이 5영업일 연속 위험자산 투자한도 초과 시 '투자한도 초과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노후생활을 하기 위한 자산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보다 장기적인 관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운용상품 변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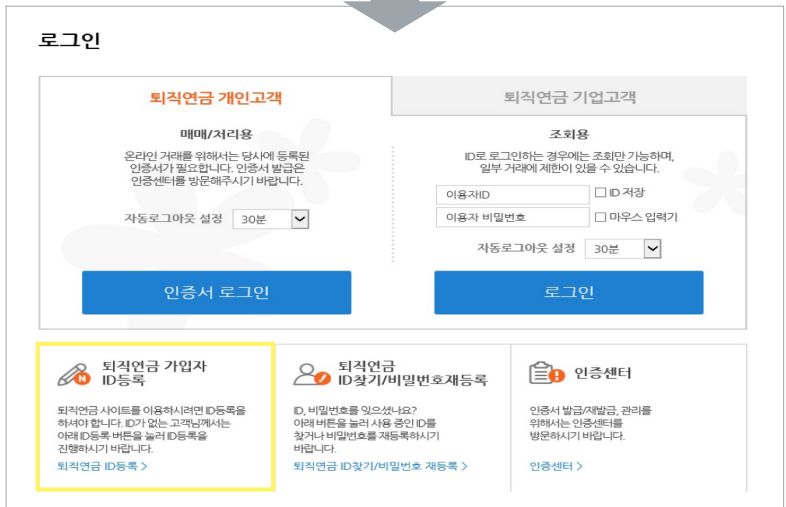
Q5. 내 연금정보는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유안타증권 홈페이지

유안타증권 퇴직연금 홈페이지 (www.myasset.com /퇴직연금HOME)



당사 홈페이지 로그인 가능한 인증서가 있어야 퇴직연금 아이디 등록이 가능합니다. (당사에 계좌가 없으신 가입자는 [유안타증권 스마트 계좌개설] 어플 등을 통하여 계좌개설을 하시면 인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Q5. 내 연금정보는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여 내 연금내역을 조회하는 방법 소개

①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http://100lifeplan.fss.or.kr>) 접속



② 서비스신청 및 이용동의 등 회원가입(본인인증* 필요)

* 인증서 전자서명 또는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③ 연금조회 신청(3영업일 소요): 확인 가능시 알림메일 발송



④ 연금조회 : 로그인 후 홈페이지 상단 '내연금조회' 클릭

통합연금포털 주요기능 소개

• 내 연금조회

본인이 가입한 국민·퇴직·개인연금의 가입정보*를 조회 가능

* 가입일자, 총 납입금액, 중도인출 금액, 연금 개시 예정일 등

• 예시연금액 조회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수령 예정인 연금정보를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제공

• 노후재무설계

은퇴 시 연금자산과 노후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비교하여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납입액 정보 안내

www.myasset.com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76 유안타증권 자산컨설팅팀

고객센터 : 1588-2600

FAX : (02) 3770-5549

E-mail : pension@yuantakorea.com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은 유안타증권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교육과 관련한 사내게시용 서면자료입니다.

